002851

DB저축은행

# DB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◈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

## 1. 상품개요 및 특징

| | |
|---|---|
| 상품명 | • 퇴직연금 정기예금 |
| 상품특징 | •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|

## 2. 거래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내 용</th></tr>
<tr><td>가입대상</td><td colspan="2">•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</td></tr>
<tr><td>가입금액</td><td colspan="2">• DB형 : 제한없음 • DC형 및 IRP형 : 1억원까지</td></tr>
<tr><td>계약기간</td><td colspan="2">•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개월 이상~5년 이내<br>•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개월 이상~5년 이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예금자<br>보호여부</td><td>DC/IRP 해당<br>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</td><td>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1억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br>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</td></tr>
<tr><td>DB 비해당<br>예금보험공사 비보호</td><td>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td></tr>
<tr><td>적용이율<br>(세금납부 전)</td><td colspan="2">• 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적용(2026.11.01. 기준)<br>※신규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<br>• DC/IRP형
<table>
<tr><th>계약기간</th><th>3개월</th><th>6개월</th><th>12개월</th><th>24개월</th><th>36개월</th></tr>
<tr><td>약정이율</td><td>2.40%</td><td>2.70%</td><td>4.05%</td><td>4.05%</td><td>3.95%</td></tr>
</table>
• DB형
<table>
<tr><th>계약기간</th><th>3개월</th><th>6개월</th><th>12개월</th><th>24개월</th><th>36개월</th></tr>
<tr><td>약정이율</td><td>2.70%</td><td>3.00%</td><td>4.35%</td><td>4.35%</td><td>4.25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

*D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40호(2026.10.28.)

002851

DB저축은행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이자계산방법</td><td>•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(원미만 절사)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이자 계산식(월 단위)</th></tr>
<tr><td>복리식</td><td>원금×{(1+이율/12)$^n$-1} (n은 경과월수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이자지급방식</td><td>•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</td></tr>
<tr><td>만기처리방법</td><td>•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<br>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<br><br>•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, 개인형(IRP) 퇴직연금<br>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<br>2.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재예치</td></tr>
<tr><td>예금 해지 시 불이익</td><td>•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</td></tr>
<tr><td>일반중도해지 이자율</td><td>•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
<table>
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율 및 계산방법</th></tr>
<tr><td>1개월미만</td><td>0.1%</td></tr>
<tr>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<td>신규시점 약정이율 × 50%</td></tr>
<tr>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<td>신규시점 약정이율 × 55%</td></tr>
<tr>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<td>신규시점 약정이율 × 60%</td></tr>
<tr><td>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</td><td>신규시점 약정이율 × 70%</td></tr>
<tr><td>24개월이상</td><td>신규시점 약정이율 × 80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특별중도해지 사유</td><td>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br>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<br>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br>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br>5. 수탁자의 사임<br>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br>7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<br>8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<br>9. 수수료의 징수<br>10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td></tr>
<tr><td>특별중도해지 이자율</td><td>• 신규일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.<br>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<br><br>1. 예치기간 6개월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br>2.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br>3.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br>4.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: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br>5.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: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br><br>※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</td></tr>
</table>



*D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40호(2026.10.28.)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분할지급<br>(일부지급) | •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 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. 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<br>1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br>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br>3.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<br>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의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|
| 계약의 해지 | •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|
| 자료열람<br>요구권 |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br>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br>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| 제한사항 |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br>•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 불가 |

## 3. 유의 사항

■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,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■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■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■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판매 금융회사, DB저축은행 고객센터(02-3705-17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idbsb.com)**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에 분쟁조정 등 **도움을 요청**할 수 있습니다.

**※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**